거주지와 판정 규칙(tie-breaker)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어떤 사람이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체약국의 거주자입니다. 싱가포르의 개인 거주자 정의는 이 편 제VI장에서 다룬 183일 기준 및 거주(residing) 기준입니다. 스위스의 정의는 주소, 또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0일,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90일의 체류입니다.[1] 개인이 양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제4조는 익숙한 순서를 적용합니다.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그리고 이 모두로 결정되지 않으면 상호합의 순입니다.[2] 회사의 경우 판정 기준은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판정 규칙은 추크(Zug)에 집 한 채, 싱가포르에 아파트 한 채를 두고 한 해를 두 곳에서 나누어 보내는 창업자의 사례를 결정합니다. 두 곳이 모두 항구적 주거라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합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당국은 모두 실무상 단순한 체류일수보다 가족, 사업 관리 및 사회적 유대를 더 중시해 왔습니다. 가족은 추크에 살고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관리되는 창업자는 중심지가 나뉘어 있으며, 이 경우 일상적 거소(체류일수)가 결정합니다. 한 해를 균등하게 나누어 보내는 창업자는 국적 기준에 이르게 됩니다. 협정상 판정 규칙이 패배한 국가에서의 국내법상 거주지를 모든 목적에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규칙은 협정상 어느 국가가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있는지만을 정합니다. 패배한 국가는 원천지 과세권을 유지하며, 스위스의 경우 그 사람이 국내법상 계속 스위스 거주자라면 부유세 과세권도 유지합니다. 협정이 부유세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

한 창업자가 2025년에 자신의 싱가포르 회사를 매각하고, 싱가포르 아파트와 ONE Pass는 유지한 채, 2026년 추크에 집을 사서 아내와 자녀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170일, 싱가포르에서 150일을 보내고 나머지는 여행으로 보냅니다. 스위스는 가족이 이주한 날부터 그가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싱가포르는 그가 연중 일부 기간 거주하였고 3년 특례(three-year concession)에 따라 그를 거주자로 봅니다. 두 곳 모두 항구적 주거입니다. 가족이 그곳에 있고 사업은 매각되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추크입니다. 협정에 따라 그는 2026년에 스위스 거주자가 됩니다. 스위스는 도착일부터 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고, 협정 밖에서 토큰을 포함한 그의 전 세계 재산에 부유세를 과세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 이는 없습니다. 그는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추크의 정액과세(lump sum)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거주자로 도착한 후에도 정액과세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첫해의 과세는 이미 이루어진 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두 허브 간 구조 설계 문제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쟁점입니다. 유일한 이사가 추크에 살면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결정하는 싱가포르 회사는 제4조에 따라 협정 목적상 스위스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연방직접세법(Direct Federal Tax Act) 제50조에 따라 스위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회사로서 그 회사의 전 세계 이익에 과세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section 10L(이 편 제II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권한을 가진 거주 이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이사회, 그리고 결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의사록입니다.[3] 스위스 당국은 싱가포르에서 관리되는 추크 AG에 대해서도 같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은 기준을 반대로 적용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스위스 칸톤(주) 당국은 IRAS보다 더 신속하게 실질적 관리를 주장합니다. 스위스의 전 세계 과세 제도에서는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

1. Direct Federal Tax Act (DFTA; DBG), SR 642.11, Art. 3 paras 1–3(주소 또는 영리활동 시 최소 30일, 영리활동이 없는 경우 90일 체류에 의한 세법상 거주지); Income Tax Act 1947, s. 2(1)(싱가포르 거주자). ↩
2. Singapore–Switzerland DTA 2011, Art. 4(거주자; 개인에 대해서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및 상호합의에 의한 판정, 개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한 판정). ↩
3. Direct Federal Tax Act (DFTA; DBG), SR 642.11, Art. 50(등록 사무소 또는 스위스 내 실질적 관리에 의한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 Income Tax Act 1947, s. 2(1), 회사에 대한 “resident in Singapore”의 정의(싱가포르에서 행사되는 지배 및 관리).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